

용접사 기량자격의 갱신

■ 주요 개정 사항 요약

관련 규칙	시행 일정
규칙/적용지침 2편 재료 및 용접	2019년 10월 1일(재료 및 용접의 승인 신청일 또는 선박의 건조계약일 기준기준) 시행사항 - 회보 시행 -

■ 주요 개정 사항

○ 개정 사유

선체구조에 종사하는 용접사의 기량은 선체구조부의 용접 품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. 이러한 취지로 IACS UR W32에 따른 자격 갱신이 이미 신설되었지만, 조선소에서 자체적으로 용접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인되고 보증된다면 자체 갱신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게 됨.

○ 개정 사항

조선소/제조자가 ISO 3834-2 또는 동등 요구사항에 따른 품질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용접사 기량자격의 자체 갱신이 가능하도록 개정함(적용지침 2편)

○ 영향 분석

- ✓ 안전, 보안 또는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 및/또는 기여
: 해당 사항 없음.
- ✓ 순치수 또는 총치수에 미치는 영향
: 해당 사항 없음.